##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문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< 국가자격시험 수험자 준수사항 >

-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험 2주전 부터는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수험자는 시험위원의 방역수칙 안내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.
- 시험장 입실 시에는 비치된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.
- (마스크 착용 적극권고) 국가자격시험장은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 ·밀접) 실내 환경에 해당함으로 모든 시험장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(KF94 이상을 권장) 착용을 적극권고 드립니다.
- 단,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위원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인후통, 두통,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위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.
- 시험 중 증상발현 수험자는 응시 제한될 수 있으며, 불가피한 경우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.
- 모델을 동반하는 미용사(일반, 피부, 네일, 메이크업) 종목 실기시험은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는 모델을 동반하셔야 합니다.
- 격리자 등\*(확진자 포함)은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입원치료,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
- 확진환자, 자가격리자,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안에 본인의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%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동거가족\*이 확진환자, 자가격리자이거나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기간 안에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도 100% 환불
- \* 단,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가 증명되는 자에 한함(동거인 포함)
- ※ 제출서류\*: 환불신청서, 확진·격리 관련 증빙서류, 신분증 사본(생년월일) 등 관련 서류(동거가족관련 환불은 주민등록등본(시험일 이후 30일 이내 발급) 필수 제출)
  - \* 큐넷 공지사항「코로나19 관련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환불신청 안내」참조
- 격리자(확진자 포함) 중에 시험 응시가 가능한 종목\*에 해당되어 부득이 시험응시 희망시 중앙방역대책본부 「코로나-19 지침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험자 사전알림 의무\*\*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  - \* 응시가능 종목 및 제출서류: 큐넷 공지사항「코로나19 확진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」참조하여 시험 3일 전까지 사전 신청(연 2회 이상 시행 시험 제외)
  - \*\*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<sup>1</sup>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, 2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진/격리 통보 사실 알림(안내문 시험별 연락처 참조)
- 격리자가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허용 승인을 받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경우 시험위원 및 주치의·시설 관계자 등의 안내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
-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변경, 연기·취소 등 긴급한 연락(문자 발송 등)을 위하여 수험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큐넷\*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,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  - \* 큐넷 [마이페이지]-[개인정보 관리]-[개인정보 수정]
-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 시고, 우리 공단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2023년 2월 1일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